

「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」 수요기반형(On-Demand) 2차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공고

혁신 스타트업과 대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「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」 수요기반형 트랙에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7월 24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모집 개요

- ☐ **사업목적** :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(OI)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OI 생태계 활성화 추진
- ☐ **모집대상** : 오픈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협업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
 - 수요기업 : 스타트업과 협업 희망하는 수요기업(대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)
 - 스타트업 : ‘중소기업창업지원법’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*
- ☐ **선정규모** : 스타트업 20개사 내외

< 지원 유형 개요 >

구분	지원대상
신규협업형	오픈이노베이션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
후속협업형	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을 수행해본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과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협업을 희망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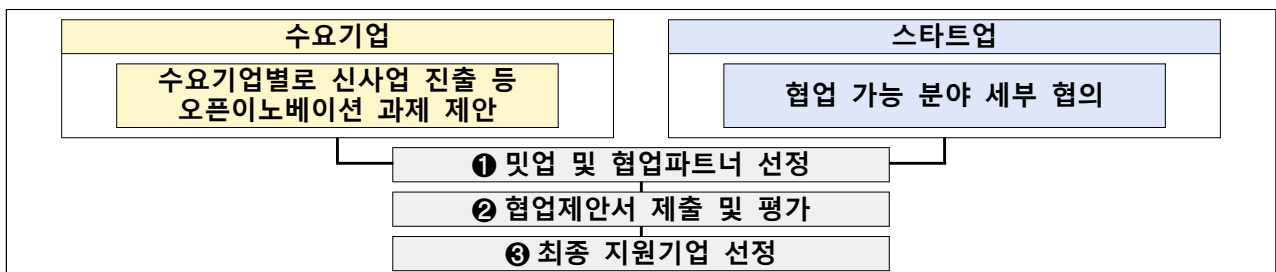
* 각각의 모집 유형 중 택 1하여 신청, 선정규모는 신청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☐ **모집기간** : 2025. 7. 24.(목) ~ 2025. 8. 18.(월) 16시까지(기한연수)

2. 세부 모집유형

① 신규협업형 세부 지원방안

- ☐ **운영목적** :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Pooling 및 밋업을 통해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, 참가자 주도의 상시적 협업 지원
- ☐ **참여대상** : 본 ‘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’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협업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
- ☐ **선정규모** : 스타트업 10개사 내외
- ☐ **지원내용** :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및 R&D 사업 연계
 - (사업화 자금) 신제품·서비스 검증, 도입 등 수요기업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 지원 (과제별 최대 6천만원)
 - (기술개발연계) 중기부 ‘창업성장기술개발 (최대 1.5년, 2억원)’ 및 ‘구매연계형 R&D (최대 2년, 6억원)’ 사업을 통한 자금 연계 지원
 - *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여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요건, 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
- ☐ **지원기간** :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 ('25. 10. ~ '26. 2. 예정)
 - *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정부지원사업비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
- ☐ **추진절차** :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간 자율적인 탐색, 밋업을 통해 협업제안서 제출한 이후 평가 및 선정



- 협업 수요기업·스타트업 각각 Pooling 신청서* 제출 이후, 상대측 신청서를 확인하여 파트너 탐색, 오프라인 미팅 및 협업제안서 제출

* Pooling 신청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, 협업 가능 기업 탐색을 위한 신청서

- Pool 내에서 다수 기업 간 상호 협업 가능성 발견 및 협업 논의

* 주관기관에서 주최 1:1 오프라인 미팅 행사 지원

- 수요기업에서 협업 가능한 다수의 스타트업 중 협업제안서를 함께 제출할 협업 파트너 선정 및 협업제안서 기획

-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기업·스타트업이 공동으로 협업제안서를 작성하고, 스타트업이 협업제안서를 제출

* 수요기업은 각각 다른 과제 및 다른 스타트업으로 2개 협업제안서 작성이 가능하나, 스타트업은 1개 협업제안서만 제출 가능

※ ‘신규협업형’에서는 협업 수요기업-스타트업 간 기존 협업관계(MOU, 투자 등)가 있을 경우 협업제안서 제출 및 선정 불가

* 스타트업과 기존 협업 이력이 있는 경우, ‘후속 협업형’으로 신청 요망

□ **평가방법 및 절차** :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간 자율적인 탐색, 미팅을 거쳐 협업제안서 평가 및 선정

Pooling 신청서 제출	탐색 및 미팅	협업 파트너 선정	협업제안서 제출	협업제안서 평가
수요기업과 스타트업 모집 및 니즈 확인	Pool 내 상호 탐색 및 오프라인 미팅	다수의 후보 중 협업 진행할 파트너 선정	양자간 협업 과제 기획 및 협업제안서 제출	협업제안서 평가 및 기업 선정
~'25.8.18.(월)	~8월 4주	~9월 1주	~9월 2주	~ 9월 5주

*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, 모집 이후에 대한 세부 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

** 스타트업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- ① **(요건검토)**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창업기업 여부 등 지원대상 요건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② **(밋업)**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밋업을 통해 수요기업이 다수의 스타트업을 만나 협업 파트너 구성
- ③ **(서류평가)** 밋업 등을 거쳐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, 3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
 - * 협업제안서 신청·접수가 선정규모 3배수 이내일 때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
- ④ **(발표평가)** 발표평가 진행(사업계획 발표 (10분), 질의응답 (10분))
- ⑤ **(최종선정)**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 협약체결 대상 선정

< 최종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약서 제출' >

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*일 다음 영업일로 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2025년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기반형 2차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, 위 발송일 기준
※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 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됩니다.
※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※ 제출한 '협약체결확약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□ 평가지표

평가 항목	평가 내용	배점
사업이해도	수요기업·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필요성 및 추진 체계성 (조직 등)	20
과제구체성	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체성 및 명료성	30
실현가능성	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현 난이도 적정성 및 현실성	30
협업가능성	협업과제에 대한 상호 필요성 및 향후 호혜적 성과 창출 가능성	20
(서류평가시 가점)	오픈이노베이션 공모 사업을 통해 협업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했거나, 협업결과물 구매실적 보유	최대 3점
합계		100(+3)

* 수요기업 또는 수요기업 CVC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, 협업 결과물을 수요기업에서 직접 구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 총합에 따라 가점 부여 (1억원 이상 3점 / 0.5억원 이상 2점 / 0.5억원 미만 1점)

② 후속협업형 세부 지원방안

□ **운영목적** : 매칭 초기 (Pre-PoC, PoC) 단계에서 매칭 적합성,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높은 우수 스타트업에 후속 사업화 지원 연계

□ **참여대상** : 중기부 사업 이외 타 사업*을 통해 초기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후속 협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

* 관련 협단체 (서울경제진흥원, 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 등), 정부·지자체 및 수요기업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공모 프로그램

□ **선정규모** : 협업 수요기업·스타트업 10개팀 내외 (2개사 1팀)

□ **지원내용** :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및 R&D 사업 연계

○ (사업화 자금) 신제품·서비스 검증, 도입 등 수요기업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 지원 (과제별 최대 6천만원)

○ (기술개발연계) 중기부 ‘창업성장기술개발 (최대 1.5년, 2억원)’ 및 ‘구매연계형 R&D (최대 2년, 6억원)’ 사업을 통한 자금 연계 지원

*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여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요건, 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

□ **지원기간** :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내외 ('25. 10~ '26. 2 예정)

□ **추진절차** : 후속 협업제안서 제출한 이후 평가 및 선정

< 평가 추진일정(안) >

지원기업 모집	서류평가	발표평가	최종선정
스타트업 신청 접수 (협업제안서 제출) ~'25.8.18.(월)	스타트업 3배수 내외 선정 ~8월 4주	스타트업 협업 계획 평가 및 최종선정 ~ 9월 2주	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선정 및 결과 안내 ~ 9월 3주

*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모집 이후에 대한 세부 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

** 스타트업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- **평가방법 및 절차** : 수요기업·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*한 오픈이노베이션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평가하여 선정

* 스타트업이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최종 신청

- ① **(요건검토)**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창업기업 여부 등 지원대상 요건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② **(서류평가)**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3배수 내외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

* 협업제안서 신청·접수가 선정규모 3배수 이내일 때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

< 평가지표 >

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
사업이해도	수요기업·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필요성 및 추진 체계성 (조직 등)	20
과제구체성	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체성 및 명료성	20
실현가능성	협업과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구현 난이도 적정성 및 현실성	30
협업적합성	기존 협업 실적 및 향후 호혜적 성과 확장 가능성	30
(서류평가시 가점)	오픈이노베이션 공모 사업을 통해 협업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했거나, 협업결과물 구매실적*이 있는 경우	최대 3점
	오픈이노베이션 '제3자 중개기관(기업)**에서 해당 기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***에 참여한 수요기업·스타트업팀 중 우수팀 추천 시 (제3자 중개기관(기업)별 최대 1개팀 추천 가능 / 추천서 양식4 참고)	2점
합계		100(+5)

* 수요기업 또는 수요기업 CVC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, 협업 결과물을 수요기업에서 직접 구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 총합에 따라 가점 부여 (1억원 이상 3점 / 0.5억원 이상 2점 / 0.5억원 미만 1점)

** 제3자 중개기관(기업)은 협업 당사자(수요기업)가 아닌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지원한 기관 또는 기업(예 : 액셀러레이터, 공공기관, 지역혁신기관 등)

*** 기업 당 지원규모 3천만원 이하 스타트업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공모 프로그램

****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- ③ **(발표평가)** 발표평가 진행(사업계획 발표 (10분), 질의응답 (10분))
- ④ **(최종선정)**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 협약체결 대상 선정

3. 신청 및 제출서류

① 신규협업형

- ☐ **신청기간** : 2025. 7. 24.(목) ~ 2025. 8. 18.(월) 16시까지 (기한영수)
- ☐ **사업신청** : 스타트업은 1가지 유형을 선택후 유형내 1개 과제만 신청
- ☐ **신청접수** : 대구창업허브(<https://startup.daegu.go.kr>) 온라인 접수

< 지원사업 신청 방법 >

- ① 대구창업허브(<https://startup.daegu.go.kr>) 접속 → ② '지원사업공고' 선택 →
- ③ '「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」 수요기반형 2차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공고' 선택 → ④ 공고문 내 'DASH에서 신청하기' 선택 →
- ⑤ 참가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작성 → ⑥ 기본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(업로드) →
- ⑦ '신청하기' 선택

☐ 제출서류

No.	제출서류	비고
수 요 기 업	수요기반형 Pooling 신청서	양식1-1 첨부
	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양식3 첨부
	사업자등록증	-
	기타 서류 (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)	선택사항
스 타 트 업	수요기반형 Pooling 신청서	양식1-2 첨부
	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양식3 첨부
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)	필수제출
	창업기업 확인서(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) * 확인서 기 보유 및 공고기한 내 발급 완료된 경우, 신청시 첨부 ※ 발급처 : cert.k-startup.go.kr	필수제출
	협약체결 확약서 * 선정된 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	선정된 기업에 한해 제출
	기타 서류 (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)	선택사항

② 후속협업형

- **신청기간** : 2025. 7. 24.(목) ~ 2025. 8. 18.(월) 16시까지 (기한연수)
- **사업신청** : 스타트업은 1가지 유형을 선택후 유형내 1개 과제만 신청
- **신청접수** : K-Startup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

< 지원사업 신청 방법 >

- ① K-Startup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 접속 → ② '사업공고' 선택 →
- ③ '「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」 수요기반형 2차 '후속협업형'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공고' 선택
- ④ 공고문 내 '사업 신청 바로가기' 선택
- ⑤ 협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(업로드) → ⑥ '제출하기' 선택

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.

① 실명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
② 실명등록 경로 : www.siren24.com (☎1577-1006)

*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
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-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* 참가 신청 전 회원가입을 진행하며, 필히 스타트업의 대표자 아이디로 신청

** 사업 신청 시 'SCI 기업실명인증' 혹은 '공동인증서인증(기업인증서)' 필요

□ 제출서류

No.	제출서류	비고
스타 트 업	참가신청서 및 후속 협업제안서 등	양식2 첨부
	후속협업형 추천서(해당 시)	양식4 첨부
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)	필수제출
	창업기업 확인서(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) * 확인서 기 보유 및 공고기한 내 발급 완료된 경우, 신청시 첨부 ※ 발급처 : cert.k-startup.go.kr	필수제출
	협약체결 요약서 *선정된 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	선정된 기업에 한해 제출

□ (공통)접수 시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창업기업 확인서는 발급까지 최대 10일(토요일, 공휴일 제외) 소요되므로 '미발급 기업'은 선(先) 신청 필요,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 확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10일(영업일 기준) 소요되나 서류 미비 및 보완 등의 경우 소요기간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 바람

4.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**신청 자격**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,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(기업)

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▶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(창업(설립)일 기준) : 2018. 7. 25. ~ 2025. 7. 24.

-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 - 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(**참고 1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**)
 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
※ 7년 이내 창업기업 증명을 위한 '창업기업 확인서' 발급 및 제출 필수

- *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참고 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, 아래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- ① '20~'21년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, 2탄 및 '22년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
- ② '23~'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기업

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, [참고 4] 참고 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. 단, 공고사업과 '동일연도'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

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5. 문의처

☐ 사업문의

- (총괄기관)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(044-204-7671/7643)
- (전문기관)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(044-410-1989/1767/1716)
- (주관기관)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OI팀 (053-359-3670)

☐ 사업문의

- 온라인 신청(시스템) 문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없이 ☎1357)

6. 유의사항

사업에 신청하는 스타트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
* **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광장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**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및 평가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Pooling 신청서 및 협업제안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후 공동·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 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이 불가 [참고 4]. 단, '25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 - 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 사업만 수행 가능
- 사업신청자(대표자)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'25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
-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,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최종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 마감 후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,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평가 결과 수요기업별 적정 창업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'25년 문제해결형(Top-Down), 자율제안형(Bottom-Up), 수요기반형(On-Demand) 1차, 중견기업-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와 중복수혜 불가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관련 규정*, 전문·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선정자에게 있음
- *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세부관리기준 등
- 선정자는 협업제안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프로그램 참여,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* 될 수 있으며,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

*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외
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 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‘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 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 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, 협약 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 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 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 하여야 함
- 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 - 연계지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됨
 -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타부처 및 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제안을 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처리
 - 수요기업에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창업기업 해결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

-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의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유출을 금지하며,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
 - 협업제안서 제출시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수요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 - 선정된 수요기업과 스타트업은 협약기간이 시작되면, NDA를 체결*하여 협업을 진행해야 함
- * NDA 체결은 선정된 수요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선정된 수요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과제 내용 및 결과물은 추후 협업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

참고1

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부도/파산 - 2년 까지			창업아님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 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
이종		창 업		

- 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영 시행 (2024.3.15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참고2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- ▶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,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,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(기업)

연번	업태명
1	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
2	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, 개발 및 판매
3	가상화폐 거래소업
4	가상화폐 개발업
5	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
6	가상자산 취급업
7	가상자산의 교환, 이전, 매매업
8	암호화폐 공개(ICO)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

* 단,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

** 기준 업태는 추가·변경될 수 있음

참고3

창업기업 제재조항

(Ⅱ) 창업기업등 제재 및 환수 조항

제재 및 환수 사유	제재 및 환수기준		비고
	참여제한	사업비 환수	
☐ 고의로 정부지원사업비를 횡령,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☐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한 경우 *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·유사한 제출 자료(사업계획서 포함)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	5년	전액 환수	-
☐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* *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☐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·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	3년		
☐ 협약 시작일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○ 고의성이 있는 경우 ○ 고의성이 없는 경우	1년	전액환수	-
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☐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	1년	잔액환수	
☐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☐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	3년	전액환수	별도제재
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☐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·폐업한 경우 ○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(창업포함)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○ 정당한 사유 없이 휴·폐업한 경우	1년	전액환수	-
☐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○ 대표자의 사망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·폐업한 경우 ○ 전염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·포기·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○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	1년	전액 환수	-
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☐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☐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☐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자기부담사업비로 활용하는 경우 ☐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		잔액 환수	경고
☐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☐ 창업기업등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			
☐ 단순 착오, 지침 미숙지 등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○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○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		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	개선요청
		해당금액 환수	개선요청

- *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'중단',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'실패' 처리
- *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* 창업기업등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정부지원사업비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
- * 주의 2회 = 경고 1회(협약기간 내)
- * 정해진 기간 내 정부지원사업비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채권추심 진행
- * 상기 항목 중,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,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

참고4**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**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•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2	•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3	• 창업도약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4	•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	중소벤처기업부
5	•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TIPS 사업화)	중소벤처기업부
6	• 통합 창업패키지 지원(특화창업패키지)	중소벤처기업부
7	•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8	•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9	• 신사업창업사관학교	중소벤처기업부
10	•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11	•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2	•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3	•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4	•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5	• 예술기업 성장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6	•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7	• 스포츠산업 창업중기(엑셀러레이팅)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8	•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9	•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0	•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1	•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2	•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23	•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4	•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환경부
25	• 농식품 벤처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6	•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27	•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(DATA-Stars)	과학기술정보통신부